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(2024. 2. 29.)

도시관리계획(마포구 염리동 168-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## 검토보고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
# 도시관리계획(마포구 염리동 168-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##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 24-05

#### 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도시계획과)

나. 제 출 일 : 2024. 2. 16.

다. 회 부 일 : 2024. 2. 20.

#### 2. 제출이유

마포구 염리동 168-1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 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음.

#### 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- 위치: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-9 일대(구역면적 9,808.6㎡)
- 용도지역: 제3종일반주거지역 → 제3종일반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
- 내용: 역세권 활성화사업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
 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
- 추진경위
  - 2021. 09. 17.: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통보(조건부 선정)(서울시→마포구)
  - 2021. 11.~2023. 06.: 총괄 MP회의(1차~3차)
  - 2023. 03.~2023. 06.: 역세권 활성화사업 市지원자문단 회의(1차~2차)
  - 2023. 08. 22.: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(사업시행자 → 마포구)
  - 2023. 09. 14.~10. 04.: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·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(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3-1363호)

- 2023. 03. ~ 2023. 06.: 역세권 활성화사업 市지원자문단 회의(3차)
- 2024. 01. 18.~02. 01.: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
  (안) 재열람공고(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4-89호)
- 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참고.

#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#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제출 배경

- 염리동168-9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이 제정된 후 2021년 9월 17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음.
- 해당 지역은 마포·공덕 지역 중심의 초역세권으로 도심 업무축의 교차점에 위치한 요충지로서, 업무시설의 건축으로 창업공간을 확보 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임. 또한, 용도지역 완화에 따른 시설을 공공기여로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계획 사항

-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3단계 용도지역까지 변경함.
- 건축계획안은 면적 9,808.6㎡에 업무, 문화 및 집회시설, 근린생활시설로 용적률 799.83%를 공공기여로 확보하여 지하6층~지상24층과 공 공기여분 지상8층으로 최고높이 110m 임.
-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계획은 총 2,967.6㎡중 도로 299.2㎡와

공공기여시설(공공임대산업시설, 상가, 지역 필요시설 등)로 구성되어 있음.

- 시설별 세부사항은 공공임대상가에는 장기안심상가, 공공임대산업시설에는 컨퍼런스룸, 지역필요시설에는 햇빛센터로 계획되어 있음.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참고.

#### 다. 종합의견

-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에 따라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- 대상지는 마포・공덕 지역 중심의 지하철 5,6호선과 경의・중앙선,
  공항철도의 노선이 지나는 초역세권으로 마포 경제발전 활성화 및
  도시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.
- 금번 계획은 사업 제안서 제출 후 마스터플레너 회의 및 서울시 지원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<sup>1)</sup>으로 업무중심지 기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결정되어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3단계 증변경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.
- 이에 따른 공공기여사항으로 공공기여율 기준 34%이상을 확보하였는데, 용도로는 기반시설과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데 공공임대상가와 공유라운지, 공유회의실 그리고 지역필요시설로서 햇빛센터를 계획하고 있음.

<sup>1)</sup>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기준(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)

용도지역		기준(허용)용적률	상한용적률
변경 전	변경 후	/1군(이공)공격환	(3 안중 <u>주</u> =
제3종일반주거지역		250%이하	800%이하
준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400%이하	, , ,
근린상업지역		600%이하	(역사도심 600%이하)

이 같은 사항은 상위기준을 수렴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,
 2030 생활권계획에 따른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반영 가능성 여부와 인근 필지와의 통합개발로 토지의 정형화를 통한 최적화와 주거 및 상업 지역의 조화, 토지의 가치 향상 등 토지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전문위원	신 준 호
주무관	박 철 호

### [관계법령]

####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51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8의2. 도시지역 내 주거·상업·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

####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사업대상지)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(이하 "사업대상지"라 한다)는 역세 권등에 위치하면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조에 따른 용도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.

- 1.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 지역을 포함한다)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
- 2.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, 일반상업지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최소면적·노후도·접도조건을 포함한 지정 요건 등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용도지역 조정 기준) ① ①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조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1. 중심지체계 및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 등 사업대상지 입지특성
- 2.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상업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적정 규모
- 3. 지역간 균형 발전